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 안	1646
번 호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 제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제출사유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보고 내용

- 2018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된 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2016년 군의회 제248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113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718개소
- 금회 의회보고 대상인 2018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11개소, 2016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651개소

(2018. 12. 31. 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시설								집행율 (%)
						미집행전체		10년미만		10년도래		10년초과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계		3,113	14,188,370	2,395	11,015,876	718	3,172,494	54	514,655	11	8,563	653	2,649,276	77.6
도로	소계	2,438	5,862,323	1,800	4,806,243	638	1,056,080	48	115,867	10	8,296	580	931,917	82.0
	중로	313	2,279,160	289	2,135,697	24	143,463	1	15,497	1	374	22	127,592	93.7
	소로	2,125	3,583,163	1,511	2,670,546	614	912,617	47	100,370	9	7,922	558	804,325	74.5
주차장	노외 주차장	96	171,411	65	152,691	31	18,720	1	213	1	267	29	18,240	89.1
광장	경관광장	1	19,650	-	-	1	19,650	1	19,650	-	-	-	-	0.0
공원	소계	94	221,922	67	145,122	27	76,800	3	47,200	-	-	24	29,600	65.4
	어린이 공원	70	150,614	59	130,874	11	19,740	-	-	-	-	11	19,740	86.9
	소공원	21	15,100	7	4,860	14	10,240	1	380	-	-	13	9,860	32.2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2	46,820	-	-	-	-	16.7
녹지	소계	191	3,010,857	171	1,341,338	20	1,669,519	-	-			20	1,669,519	44.6
	원충녹지	139	2,775,579	119	1,106,060	20	1,669,519	-	-			20	1,669,519	39.8
	경관녹지	49	144,498	49	144,498	-	-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	-	100.0
연구 시설	연구시설	5	1,440,595	4	1,108,870	1	331,725	1	331,725	-	-	-	-	77.0
기타 시설	기타시설	288	3,461,612	288	3,461,612	-	-	-	-	-	-	-	-	1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8. 12. 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664	2,657,839	
	도 로	합 계	590	940,213	
		중 로	23	127,966	
		소 로	567	812,247	
	주차장	노외주차장	30	18,507	
	공 원	합 계	24	29,600	
		어린이공원	11	19,740	
		소공원	13	9,860	
	녹 지	완충녹지	20	1,669,519	

○ 2018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8. 12. 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2018년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	총 계		11	8,563	달성군고시 제2008-8호 (2008. 02. 20)
	도 로	합 계	10	8,296	
		중 로	1	374	중로3-400
		소 로	9	3,223	소로2-가21
				397	소로2-가22
				999	소로2-가23
				255	소로2-화59
				345	소로2-화60
				614	소로2-화61
				437	소로3-가20
				885	소로3-옥151
				767	소로3-하35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67	행정3주차장

○ 2016년 보고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2018. 12. 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2016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	총 계		651	2,603,043	
	도 로	합 계	579	931,339	
		중 로	22	127,592	
		소 로	557	803,747	
	주차장	노외주차장	29	18,240	
	공원	합 계	24	29,600	
		어린이공원	11	19,740	
		소 공 원	13	9,860	
	녹지	완충녹지	19	1,623,864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18개소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717개소(군비 716, 국·시비 1)

※ 경관광장(19,650㎡)은 현행 도시 경관광장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중
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단위: 천㎡,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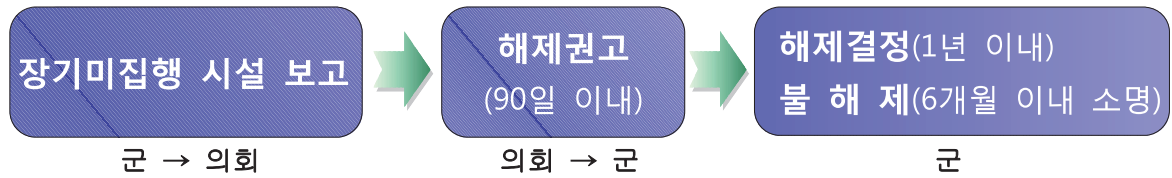
구분	시설 구분	합 계			2019년~2021년 (1단계)			2022년~2024년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717	3,152	8,335	418	2,210	3,656	299	942	4,679
군비	소계	716	2,821	4,573	417	2,174	3,251	299	647	1,322
	도로	638	1,056	3,024	398	730	2,095	240	326	929
	주차장	31	19	71	1	5	19	30	14	52
	공원	27	77	161	9	20	41	18	57	120
	녹지	20	1,669	1,317	9	1,419	1,096	11	250	221
국·시비	연구시설	1	331	3,762	1	36	405	(1)	295	3,357

※ 경관광장(2017. 05. 3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참고 1

의회보고 절차 및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



○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참고 2

관계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4항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